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01. 20.(월) ~ 2020. 01. 27.(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곽건우 ☎ 02- 930-1463 다. 설 계 자 : (주)삼하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석도 ☎ 02- 595-3094 라. 시 공 자 :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하석주 ☎ 02-3480-9114 마.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5-3번지 일대 ○ 대지면적 : 35,315㎡ ○ 연 면 적 : 163,563.424㎡ ○ 규 모 : 지하3~지상29층 아파트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1,163세대 ○ 공사기간 : 2020.02. ~ 2022.10.(33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20.04. ~ 2022.10.(31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14.11.06.(변경승인일 2019.12.06.)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405,804,057,000원 ○ 총공사비 : 230,168,364,000원 ○ 전기공사비 : 14,887,325,000원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1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함.	사.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870,587,577원 ※ 기초금액 : 844,469,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천원단위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 주요예정공정표																																			
구분 \ 년월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전 체 공 정																																		33개월	
전 기 공 사																																		31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4.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01.28.(화) 10:00 ~ 2020.01.30.(목)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5. 개찰일시 : 2020.01.30.(목) 14: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입찰결과 우선순위(1~5순위)업체에 대하여 노원구청 홈페이지(힐링도시노원→알림마당→채용/공고/고시)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을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인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0.01.31.(금) ~ 2020.02.04.(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도시재생과(3층)

※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①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0.02.05.(수) ~ 2020.02.07.(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노원구청(도시재생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류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 총괄표(별지 제7호 서식)

(3) 감리원 배치계획표 : 본 공고상의 별첨3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

(4) 서약서 1부(본 공고상의 별첨 4 양식)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자기평가서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4) 작업계획 및 기법

(5)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경우

(6) 업무중첩도 관련 배치확인 서류(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 : 해당하는 경우)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그 밖의 응모서류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뒷면 구비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기 바람.

9.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로 한다.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②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한 경력 및 실적 평가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 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①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여 평가.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②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 ③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④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⑤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증빙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으며 미 제출한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세부평가항목관련 구비서류 미비시 해당 세부평가항목 점수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 합니다.
-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한 후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우선순위업체 선정 후 선순위 업체부터 세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 가. 평균 유동비율 : [127.55%](#)
- 나.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8.97%](#)

11.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절차등

- 가. 평가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 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 (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나.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 다.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감리자모집 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업자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 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나. 감리원
 -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② 상주감리인·월 산출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 ③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않음을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배치(계획)확인서 제출시 인정)

다.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
된 감리자에게 1.5점 가산점 부여

13. 기타사항

가.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상기 사업에 2건 이상 응모할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
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협회 통보함.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
조감리원의 평가는 만점처리 함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
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 기준	내 용	수행 계획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 관리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배치 계획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 관련 감리원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별첨3양식 제출)					
	쪽 수 (표지, 목차, 간지 제외)		10쪽 이상	10쪽미 만	7쪽 미만	5쪽 미만	부적합	-

구 분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작업기법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 용		당해 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쪽 수 (표지, 목차, 간지 제외)		4쪽 이상	3쪽	2쪽	1쪽	부적합	-

자. 감리업자의 자기평가 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된 경우
에는 하향조정 평가 합니다.(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차.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카.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
니하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02-2116-39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m ²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뒤 쪽 참고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우선순위5개업체)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교체빈 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자 기 평 가 서

I. 총괄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감리원 (성 명)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감리원 (성 명)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감리원 (성 명)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 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 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가. 지 역	(+1.5)			
	1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5	다. 부실벌점	(-5)			
합 계			100±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 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 하고, “허위·거짓 등” 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교란에 기재할 것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점	평가																														
1. 참여감리원		50																																					
가.책 임 감리원	(1) 등급	[25] (-)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2) 경력 및 실적	(25)	○ 배점기준																																				
			<table><tr><th>규 모</th><th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h></tr><tr><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6년 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tr><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1,200세대이상</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2년이상</td><td>12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td></tr><tr><td>점 수</td><td>25</td><td>22</td><td>19</td><td>16</td><td>13</td></tr></table>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h>규 모</th><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200세대이상</td></tr><tr><th>년 수</th><td>2년</td><td>3년</td><td>4년</td></tr></table>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나.보 조 감리원	(1)등급	[14]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경 력 및 실적	(14)	○ 배점기준																																				
			<table><tr><th>규 모</th><th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h></tr><tr><td rowspan="2">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3년이상</td><td colspan="2">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tr><td>14</td><td colspan="2">12</td><td>10</td></tr><tr><td>1,200세대이상</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점 수</td><td>14</td><td>12</td><td>10</td><td>8</td></tr></table>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 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다.비상주 감리원		(1)등급	[11]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 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 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2) 경 력 및 실적	(9)	○ 배점기준																																				
		<table><tr><td>경 력</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점 수</td><td>9</td><td>7</td><td>5</td><td>3</td></tr></table>						경 력	10년 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경 력	10년 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 실 적	-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 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 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table><tr><td>구 모</td><td colspan="5">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td></tr><tr><td>1,200세대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64이상</td><td>64미만 48이상</td><td>48미만 32이상</td><td>32미만</td></tr><tr><td>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 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td></tr><tr><td>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9이상</td><td>9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						구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구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산출근거			○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2																																					
3. 신용도			[10]																																					
가. 입찰 참가 제한 · 영업 정지	(1) 감리 업체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 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 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 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 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 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나.재정 상태 건실도	(1) 자본 비율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 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2) 유동비율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 실적	-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tr><td>구 분</td><td>5년이하</td><td>5년초과 10년이하</td><td>10년초과 20년이하</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r><td>전력신기술</td><td>100%</td><td>80%</td><td>-</td></tr></table>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나. 기술 개발 투자 실적	-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다. 교육 실적	-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점																		
			- 1주이상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점																		

5. 업무중첩도		[10]																			
가.상주 감리원	-	(6)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 colspan="2">책임감리원</td><td colspan="3">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 colspan="2">4</td><td colspan="3">2</td></tr></table>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나.비상주 감리원	-	(4)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table><tr><td>구 분</td><td>6개소미만</td><td>6개소</td><td>7개소</td><td>8개소</td><td>9개소이상</td></tr><tr><td>점 수</td><td>4</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6. 교체빈도		[5]																			
가.감리 업체	-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교체빈도 (%)</td><td>10%미만</td><td>10%미만 20%이상</td><td>20%미만 30%이상</td><td colspan="2">30%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 colspan="2">0</td></tr></table>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나.참여 감리원	-	(2.5)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나. 참여감리원 :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	(3)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5">제 출</th><th rowspan="2">미제출</th></tr><tr><th>수</th><th>우</th><th>미</th><th>양</th><th>가</th></tr><tr><th colspan="2">점 수</th><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r><th rowspan="3">평가 기준</th><th rowspan="2">내용</th><td>수행계획</td><td colspan="5">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td><td rowspan="2">-</td></tr><tr><td>배치계획</td><td colspan="5">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감리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치 (별첨3양식 제출)</td></tr><tr><th>쪽 수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th><td>10쪽 이상</td><td>10쪽미만 ~ 7쪽이상</td><td>7쪽 미만</td><td>5쪽 미만</td><td>부적합 내용부실</td><td>-</td></tr></table>						구 분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 기준	내용	수행계획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배치계획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감리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치 (별첨3양식 제출)					쪽 수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10쪽 이상	10쪽미만 ~ 7쪽이상	7쪽 미만	5쪽 미만	부적합 내용부실	-		
	구 분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 기준	내용	수행계획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배치계획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감리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치 (별첨3양식 제출)																																																			
	쪽 수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10쪽 이상	10쪽미만 ~ 7쪽이상	7쪽 미만	5쪽 미만	부적합 내용부실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나. 작업기법	-	(2)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5">제 출</th><th rowspan="2">미제출</th></tr><tr><th>수</th><th>우</th><th>미</th><th>양</th><th>가</th></tr><tr><th colspan="2">점 수</th><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r><th rowspan="2">평가 기준</th><th rowspan="2">쪽 수 (표지, 목차, 간지 제외)</th><td colspan="5">당해 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td><td>-</td></tr><tr><td>4쪽 0상</td><td>3쪽</td><td>2쪽</td><td>1쪽</td><td>부적합 내용부실</td><td>-</td></tr></table>						구 분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 기준	쪽 수 (표지, 목차, 간지 제외)	당해 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4쪽 0상	3쪽	2쪽	1쪽	부적합 내용부실	-										
	구 분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 기준	쪽 수 (표지, 목차, 간지 제외)	당해 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4쪽 0상	3쪽	2쪽	1쪽	부적합 내용부실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업기법 :																																																			
8. 가점 및 감점			[2.5] [-5]																																																			
가. 가점	(1) 지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임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	부실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 부실벌점 :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 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1. 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회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전기부문)		총매출액 (전기부문)	
		합계(A)		합계(B)	
		3차년		3차년	
		2차년		2차년	
		1차년		1차년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교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층, 동, 세대		m ²	준공일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감리업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월간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시·도지사 인				년 월 일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 업체에 한함)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 임 감 리 원							
	[부표3-1] 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부표3-1] 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 조 감 리 원							
	합 계				일 년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 상 주 감 리 원							
	[부표3-1] 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부표3-1] 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 업체에 한함)

[illegible]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 3]

감리원 배치 계획표

- 용역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투 입 일 자																								개월	비고						
			2019												2020														2021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책임	○○○	특급																									23	예시						
보조	○○○	-																																
	○○○	-																																
비상주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4]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공 고 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공고번호 : 노원구 공고 제 2019 - 호)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 업체는 귀 노원구에서 공고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 기재 및 부실한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감리업자 선정취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20	공공건물	25	의료시설
21	주거시설	26	종교시설
22	업무시설	27	체육시설
23	판매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4	숙박시설	29	기타건축시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예 시 >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 연면적(m²)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m²)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m²) = 25,000(m²)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 연면적(m²)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m²)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m²) = 40,000(m²)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 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text{○ 교체빈도}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부표 3-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1. 총 괄

구 분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5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 - 3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
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
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
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	70	$7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55	82.95%
1,200세대 미만	50	50	$5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